제356회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8년2월13일(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인사청문제도 관련 보고

상정된 안건

1. 인사청문제도 관련 보고

(14시17분 개의)

○소위원장 이훈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오시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정식으로 보고를 받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리뷰를 같이 했으 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회의 자료로 소위 법안 심사 자료, 그다음에 공청회 자료까지 지금 다 앞에 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법안 심사를 새롭게, 지금 실체적으로 진행되 지 못하더라도 청문제도 개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리뷰를 같이 못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공감대를 만들기가 쉽 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일단은 나중에 보고를 한 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 본적인 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궁금 한 사항이 있으면 수석전문위원이 답변 조금 해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리뷰만 간단히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 까?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괜찮습니다.
- **○소위원장 이훈**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들?
- ○강훈식 위원 오늘요?
- ○**소위원장 이훈** 간단하게.
- ○김경수 위원 그러면 쟁점 위주로만……
- ○소위원장 이훈 쟁점 위주로만.
- ○김경수 위원 어떤 게 쟁점이 되는지만 좀 훑

어보는 걸로……

- ○소위원장 이훈 어떤 게 쟁점이고, 이렇게 해 서 일단은……
- ○김경수 위원 내용은 다 계실 때 하더라도.
- ○소위원장 이훈 왜냐하면 계신 분들도 한 번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1. 인사청문제도 관련 보고

(14시20분)

○소위원장 이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쟁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특별한 절차 없이 중간중간에 또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 면 수석전문위원한테 질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쟁점 위주로 리뷰를 한번 하겠습 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인사청문 관련 보고'라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중에서 5페이지부 터 지금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쟁점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법안들이 한 47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 회법이 17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30건이 나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9대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19대 때 이어서 20대 때 들어와 있는 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쟁점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청문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인사청문대상이 65개 기관 대상자가되겠습니다. 그것은 1페이지에 있고요, 참조해 주시고. 그 65개 공직 이외에 지금 추가로 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추가로 확대하자는데 대해서 어떻든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쭉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을 추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대통령비서 실장하고 국가안보실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기준으로 지금 분류할 수 있고, 쪽 보시면 방위사업청장이라든지 특임공관장, 지금 4강 대사들하고…… 권익위원장은 채이배의원이 발의했는데, 이것은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을 인사청문대상으로 포함시킨 법을 얼마전에 통과시켜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 주관 위원회 일원화 관련해서 현재는 인사청문요청안이라든지 인사동의, 임명동의안이 들어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별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임명동의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 자료도1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청문특위에서 하는 23개공직 부분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42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든 인사청문특위를 폐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자는 단일안으로 김 영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시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 3인 이것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를 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의가 되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인사청문특위는 본회의 의결로 구성을 하고 그런 부분이,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그냥 본회의 의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인사청문회 분리 실시 관련해서는 지금 도덕성 검증하고 능력 검증을 분리해서 하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참고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분리하는 실익이 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리성 검증을 했을 때 비공개로 하고 그쪽에서 어떻든 통과되는 사람을 가지고 능력 검증을 하든지 그것을 전제 안 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결정을 하시든지 그런 세부적인부분은 이 부분을 논의하시면서 검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문 기간 연장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현행 20일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청문요청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회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이 너무 짧다그래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안이 나와 있고요.

또 지금 위원회 활동 기간도 여기 보면 15일에서 25일로, 이것도 앞에 부분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10일 연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청문회 실시 기간을 현행은 3일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도 좀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 기를 하시면서 5일 내지 7일 정도로 연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회 자료제출 요구 확대·강화는 그동안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청문회가 부실하게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협조를 안 해서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를 가지고 거부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청문회의 경우는 이 법 조항을 배제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가장 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동의안 등 첨부서류 확대에 보시면 지금 청와대에서 사전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국회에 넘어오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보시면 다수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 되겠습니 다.

그다음, 마지막에 임명권자가 국회에 임명동의 안 제출 전에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병역 사항, 도덕성 등 사전검증을 의무화하는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들어 와 있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증인 출석요구 권한 강화 부분인데요, 청문회를 하다 보면 증인들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도 가능하도록, 이것은 증감법에서 증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인사청문회에도 하자는 부분 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 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인데요, 이 부분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와서 발언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없 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든 증인에 준하는 수준 으로 허위증언이라든지 위증을 했을 때 처벌할 근거를 두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여기 보시 면 공직후보자가 음주 또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의장은 임명권자에게 후보자 변경 권고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인사청 문회 실시 전에 조세포탈 및 위장전입 등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거나 인사청문회 실시 중에 거짓 답변 또는 위법행위가 밝혀지는 등 부적합한 부 분이 인정되면 그 임명동의안 철회까지 가능하도 록 상당히 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죽 논의를 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정부 에서 발표한 공직 임용배제 7대 비리 및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인사청문제도 를 다시 설계할 때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 니다.

○소위원장 이훈 혹시 위원님들 들으시면서 궁 금한 점……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절차 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첫날 윤리성·도덕성 검 증하고 자동으로 일단은 넘어가나요, 그다음으 로?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넘어갑니다.

12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비공개로 하고 공개로 정 책 검증까지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검증을 해서 진짜 심각하다 이 렇게 해서 그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 고요. 그냥 넘어가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판단하 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강훈식 위원** 여기에, 경기도에서 두 분이 자 진사퇴했네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이분들은 다 비공개 검증에서 무 너지신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다 가셔서 다른 게 제기가 되어서 본인이 그만두신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 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했 을 때도 자진사퇴가 있어서……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김경수 위원 하나씩 하면, 청문 대상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국무회의 참석을 포함해서 기준을 조금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청문 대상을 확대 해 나가는 데 기준으로 삼을 만한 다른 게 좀 있 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온 법안도 보면 그런 특별한 기준보다는 공직이 중 요하고 이런 어떤 이유를 들어서 포함시키자는 것이지, 장관급이라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아 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국무회의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정책 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 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 울특별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석자 중에서 도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금융위원장만 지금 하는데 요, 이 법은 보시면 대통령비서실장하고 국가안보 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정도는 포함시 켜야 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기준보다는 직책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법 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것은 중요 한 것 같으니까 넣자, 넣자'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룰 때는 최소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직위는 청문 대상으로 확대를 하자 이렇게 논의 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저희들이 다음에 자료 만 들 때······

○김경수 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판단을 할 겁니까, 개별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직위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그렇게 '중요한 직이다'이렇게 해 버리면.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찾을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해서……

○**김경수 위원** 해외 사례도 한번 분석을 좀 해 주시지요,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해외 사례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차관보급 이상은 지금…… 16페이지 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장차관과 차관보 이상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훈 기준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 중에 안 중요한 공직이 어 디 있겠어, 따지고 보면.

○김경수 위원 몇 가지 기준안을, 다음에 보고 하실 때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혹시 보고가 가능하면, 준비가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잡아 봐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렇게 인청특위를 폐지하고 소관 상임위로 가게 되면 상임위별로 대상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표로 하나 좀 만들어 주실래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김경수 위원 이게 법사위에 너무 몰리는 것 아닌가 싶은데……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법안 심사 자료 13페이

지 보시면요……

○강훈식 위원 법사위에 28명이야.

○**김경수 위원** 법사위만 대폭 늘어나는 거네, 이렇게 되면.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아마 법사위가 가장…… ○**강훈식 위원** 법사위는 내 인사청문회만 하다 가 볼일 다 보겠네.

○소위원장 이훈 28명이면 정권 임기 초기에 몇 개월은 이것만 하겠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참고로 인사청문특위는 현재 정원이 13명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요.

○소위원장 이훈 지금 인청 분리 실시 관련해서 윤한홍 의원님 안이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것인 데 인청특위를 만드는 것을 분리하는 것도 있고 각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역시 분리하는 안 두 가지 다 올라오는 겁니까, 분리안 자체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훈 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소위원장 이훈 소관 상임위에서도 분리하고 다 분리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사실 인사청문회의 분리 실시는 19대 때 꽤 많은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혹시 19대 때도 인사청문제도개 선소위 같은 게 있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훈 거기에서 논의를 좀 하셨나?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때 공청회······

○소위원장 이훈 공청회까지 하신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공청회 한번 하고 그냥······

○소위원장 이훈 공청회 한번 하셨어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소위원장 이훈 공청회 하자고 의견 한번 내서, 결론 내려 가지고 공청회 한번 하고……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공청회 한번 정도 하고 그냥……

○소위원장 이훈 위원들끼리 논의하신 적은 없고?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심도 있게 논의 못 했습니다. 그때 정치적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내용 중에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강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인사청

문회를 하다 보면 자료제출 부분이 계속 걸리지 않습니까?

- **○소위원장 이훈** 매일 싸우지요?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금융실명거래법 이런 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출하지 않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 에 제출 안 하는데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 관련 해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예외를 두는 쪽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소위원장 이훈 한쪽은 자료 좀 덜 주려고 하 고 한쪽은 자료를 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어차피 그 싸움인데……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경 기도 자진사퇴 두 분과 관련해서요, 보니까 한 분은 도덕성 문제로 해서 자진사퇴를 했고 그다 음 한 분은 인사청문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부적 격으로 해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지금 현재 대상에 대한 부분도 있 습니까,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개인 정보 보호나……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본인, 직계'이렇 게 되어 있는데……

- ○소위원장 이훈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 ○소위원장 이훈 현재 인사청문회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법에는 "공직후보 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 이렇게 해서 대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훈 직접 관련되는 것은 어떻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직접 관련된 부분을 어 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강훈식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범위와 범 주를 정하는 일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많은 데에서…… 청와대도 보면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검증시스템에 자료들을 정리하게 하잖아 요.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시도를 해 본 적이 없지요? 이런 포맷을 만들어서……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런 시도는 없었습 니다.

○강훈식 위원 예를 들면 300개면 300개 항목에 본인이 다 체크해 가지고 제출해라……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런 문제에 고민이 좀 드는 게 아까 우리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 다만 자식의, 아버지의, 옛날에 뭐 이런 것까지 떼 오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이 쪽에서는 검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실제로 떼 지지도 않는데 그게 필요하냐' 이렇게 되니까 청 와대에서 공직검증할 때 매뉴얼이 있듯이 국회가 아예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것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합의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충분히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니즈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한 200개 항목을 다 만들어서.

○소위원장 이훈 그러면 지금 현재 청와대가 하 고 있는 것을 베끼면……

○**강훈식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같이할 수도 있 는 거지요. 굳이 뭐……

아니 왜냐하면 자료제출 요구라는 것이 너무 방대하고 어디까지가, 사실은 합리적인 선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해서…… 실제로도 자식의 10년 치 주식거래 내역을 내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 잖아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런 경우는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 비공개적으로 해서 청문위원들끼리 할 수는 있겠지요.

○김경수 위원 미국 청문의 사례를 보면 백악관 과 FBI에서 사전검증을 하잖아요. 사전검증한 자 료들을 원래는

도서관에서 나온 '인사청문회 한눈에 보기' 여 기 36페이지 밑에 주를 보면 '원래는 백악관에만 통보되지만 대통령이 허락할 경우 소관 위원회와 상원의원에게 제공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을 공유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상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조금 더 구체적인 사 례를 좀 조사해 주실래요?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조사하겠습니다.
- ○강훈식 위원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 ○김경수 위원 FBI에서 이런저런 사실 조사를 하네. 우리는 지금 청와대 인사검증만 있는 것 아 니에요?
- ○강훈식 위원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네.

이것은 FBI가 완전히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인 거지요?

○**소위원장 이훈** 그렇지요.

- ○**강훈식 위원** 우리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 전히 독립된 개념이니까……
- ○김경수 위원 그게 있기도 하고 그쪽은 사회가 투명화된 지 오래돼서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긁어 봐야 그렇게 안 나오는데 우리는 긁으면 다 나오니까……
- ○소위원장 이훈 그럴 수도 있지요.
-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훈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자료 제출요구 대상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되는, 어디까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는 아직 안 나오나? 보통 우리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는 직접 관련됐다고 보나요?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 돼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인사 청문하면서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 ○소위원장 이훈 자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계속 그렇게 된 거지요?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 합의 요구 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해 줄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 ○소위원장 이훈 예를 들자면 본인, 배우자까지는 무조건 내고 직계존비속은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정도까지라도…… 왜냐하면 아까 전에 강훈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청와대처럼 사전검증자료를 체크하게 해 놓고 나면 그것 보면서 몇 군데 이상하다 싶으면 자료를 요청할 거 아니야. 그게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관련된 거면 제출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에 관련된 문제면 위원회전체적으로 동의 절차를 밟게 하고.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것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 ○소위원장 이훈 어쨌든 사전점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베이스로 자료요구는 또 할 거란 말이에 요. 대부분이 자료요구의 기준을 마련해 주지.
- ○**강훈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만들면 기준 이 되겠지요.
- ○소위원장 이훈 사전검증자료 제출 부분 있지 요.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 ○소위원장 이훈 사전검증자료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사전검증한 자료 얘기합니까?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겁니다.
- **○소위원장 이훈** 그 얘기하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 ○소위원장 이훈 자료라기보다는 꼭 사전검증 결과보고서를 내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론적 으로 보면. 포멀한 형태가 없을 수 있거든요, 사 전검증이라는 게.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 전검증자료 및 결과' 이렇게, 박광온 의원님이 대 표발의한 안은 그렇게 돼 있네요.
- ○소위원장 이훈 우리 당 의원님들 뭐 이렇게 많이 냈어.
- ○김경수 위원 야당 시절에 낸 것 아닌가.
- ○소위원장 이훈 뒤에 금융거래내역 등 금융 관련 자료 추가하는 것은…… 동의안에다가?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동의안 등'이니까 인사 청문요청안, 동의안 이렇게……
- ○소위원장 이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동의안이든 요청안이든 금융거래내역 다 긁어다가 갖다 붙이라는 겁니까, 관련해서? 법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상 비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하게 돼 있는데 그것 말고 나머지 자료 다 긁어내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금융거래 관련해서 는 이게 예인데요,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사항'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 ○소위원장 이훈 그것을 애초에 동의안이든 요 청안에다 붙여서 보내라 이거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 낼 때.
- ○김경수 위원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필요성이, 실제로 인사청문기간이 좀 짧다 는 의견들이 있는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이 부분은 그동안 죽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현실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 정도는 반영해도……
- ○소위원장 이훈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게 된다면 도대체 얼마를…… 5일, 7일……
- ○김경수 위원 안을 보면 그냥 30일 이내로 연장하자는 안도 있고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 지연일수만큼 연장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위원 선임이 지연된 사례들, 이건 인청특위 구성이겠지요, 상임위야 뭐 별 상관이 없을 거고. 기존에 인청특위에서 위원 선임이 지연된 사례들을한번 뽑아 주실래요?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결국은 자료제출을 어느 범위에 서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증인 청문 확대 범위하고.

○강훈식 위원 그게 이원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지요. 이원화할 경우에는 자료 제출 문제가 좀 덜 될 텐데 이원화 안 할 때는 자료제출 요구가 쟁점화가 커진다고 봐야 되고

수석님, 2015년에 공청회 했던 자료에 보면 이 원화 문제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는 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의견을 주신 게 있는 데 이때 내린 결론은 결국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 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 는데 실제 공청회 때 분위기가 그랬던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이거는 그때 공청회에 참석했던 진술인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때 공청회가 전체 운영위 위원님들을 다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번처럼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강훈식 위원 기자들도 딱 이런 게 있나요. 비 공개로 하자고 할 때?

한 시간 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하셔야지요.

- ○소위원장 이훈 그러면 여기서 다음 회의 날짜 를 특정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결정 은 못 하지요?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결정하셔도 되고요. 어 쨌든 의결 사항은……
- ○소위원장 이훈 아니지만 일단은 조율을 좀 해 서 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본회의가 20일 날 있으니까요. 본회의 산회 직후로 하고 본회의가 없을 시에는 14시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경수 위원 며칠이오?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20일입니다.
- ○소위원장 이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그 거를 같이 다 결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이건 협의해서 잡으시 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추후에 상황을 보시 고 확정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이훈 그래요.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강훈식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두 차례 동안 야당 위원님들 기 다렸는데요. 저는 많이 유감스럽다 이런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자는 건 여야 공히 합의해서 만들었던 소위이니 만큼 다음번…… 또 이게 어느 한쪽의 정치적 주장으 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아니라 사실은 전 제도들 을 같이 볼 때만이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같이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 문제도 그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전체의 문제점들과 이거를 같이 살펴보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훈 일단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회의는 반드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 문제에 관해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개인적으로 는 진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 위원(3인)

강 훈 식 김경수 이 훈

○출석 전문위원

공 수 석 전 문 위 원 한 식